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4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의의원 : 이진환, 박경원, 김지훈(국)

김지훈(민), 이수련, 김상수

김영실, 이상기, 한근수

원주영

1. 제안 이유

현행 조례의 감면대상 기준이 항목별로 상이해 적용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기준을 통일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수요를 반영한 감면 기준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문 인용 오류를 정비함.(안 제26조3)

나. 감면대상 기준을 항목별로 정비·통일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

(안 별표1, 별표1의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주차수요 관리 및 교통혼잡 완화 등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장별로 운영 시간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전의 제25조에서 이동]

제26조의3제1항 중 “제25조의2제2항”을 “제26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주차장	급지구분	1구획당 주차요금		1일 주차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기본 30분	30분 초과 1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노 상 주차장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70,000원	50,000원	-
	2급지	500원	150원	5,000원	50,000원	40,000원	-
노 외 주차장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70,000원	50,000원	100,000원
	2급지	5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40,000원	80,000원
거주자우선 주차장					20,000원	20,000원	30,000원

- 이 주차요금표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며, 공영주차장의 1일 단위시간 당 주차요금 합계액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결제수단, 주차장 이용시간 등 주차장 이용조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적용하거나, 무료주차권을 교부받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은 승용자동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가.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2.5톤 이상 4.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 나. 25인승 초과 승합자동차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 주간 시간은 08:00 ~ 20:00로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의 주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급지 구분

급지구분	지 역
1급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2금지	1금지 외의 지역
-----	-----------

6. 주차요금의 감면

감면구분	감면대상
전액면제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외교사절 공무 관련 자동차</p> <p>나. 주차장 이용시간 10분 이내 자동차</p> <p>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p>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p>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p> <p>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p> <p>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p>
50%감면	<p>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p> <p>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p> <p>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p> <p>라.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p> <p>마.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모자보건수첩, 임신부자동차표지 등 임신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p> <p>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p> <p>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p> <p>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p> <p>자.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자동차</p> <p>차. 승용차부제(또는 요일제)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로서 이를 증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증 또는 표지 부착 자동차</p> <p>카.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65세이상)이 운전하는 자동차</p>

감면구분	감면대상
	<p>타. 철도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해당역 확인증, 재직증명서 등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p> <p>파.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장등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p> <p>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시간 면제 후 50% 감면</p>
기타	<p>가.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 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p> <p>나.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전년도에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는 1년 동안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p> <p>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학교 교직원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까지 주차요금 면제(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까지 면제 가능)</p> <p>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을 3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액의 30퍼센트를 감면</p> <p>마. 그 밖에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청에서 실시하는 공공행사 및 회의, 교육 관리 등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p>

[비고]

1.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2. 주차요금 중 요금 감면에 따라 발생한 10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의2]

공공(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6조제1항 및 27조 관련)

1. 주차요금표

가. 공공청사, 공공시설 중 공공문화시설 및 공공복지시설

구분	1회 주차		1일 주차	월정기권	비고
	최초 입차 후 1시간	무료 이후 10분마다			
주차요금	무료	200원	5,000원	30,000원	

나. 그 밖의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 공공공원시설 등)

구분	1회 주차		1일 주차	월정기권	비고
	최초 입차 후 1시간	무료 이후 10분마다			
주차요금	무료	200원	7,000원	30,000원	

2. 주차요금 감면

감면구분	감면대상
전액면제	가. 시 소속 공용자동차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및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자동차 라.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자동차 마.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바.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자동차 사. 시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자 확인증 또는 국세청장이 발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아.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진·출입하는 공사 및 용역 자동차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p>초과시간 50% 감면</p>	<p>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p>
<p>50% 감면</p>	<p>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다.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가 탑승한 자동차 라.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마.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모자보건수첩, 임신부자동차표지 등 임신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자.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자동차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시간 면제 후 50% 감면</p>
<p>기타</p>	<p>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등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는 해당 강좌시간에 30분을 추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최대 3시간)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체육문화센터 포함)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최대 3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 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남양주시민에 대하여 1년 동안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단, 출차시 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p>

※ 비 고

1. 다산지금지구 근린공원 1호 [어울누리 근린공원, (다산동 6114)], 다산체육공원(다산동 6138), 한강시민공원[도농지구(다산동 4325), 수석지구(수석동 442), 삼패지구(삼패동 630)] 부설주차장은 전요일 유료로 운영한다.
2.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 주차한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1일 주차를 허용하는 공공 부설주차장에 한함)
3. 시설의 용도에 따라 1일 주차 또는 월정기권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휴일, 주말 및 특정 기간에는 1일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4.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 별표1, 제26조 별표1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사용료를 납부한 체육시설 이용자 주차요금 면제 규정 신설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

다. 개정사유

- 체육시설 이용자 무료 주차시간 동일로 혼선 방지 및 주차 편의 제공
 - 공공체육시설(체육문화센터 포함) 이용자 (4시간→3시간)
 -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 이용자 (1시간→3시간)
-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자들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권익 증진과 예우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체

- 공공 체육시설 및 도시공원,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
- 2025년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 이용자 현황 : 94,110명
- 체육시설 내 1대당 주차요금 평균수입 : 2,400원
 - ※ 연간 세입감소액(추정) : 94,110명(체육시설 이용자 수)*2,400원(1대당 평균수입) = △225백만원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범위 확대 (50% 감면 →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2025년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현황 : 7,996명
 - ※ 연간 세입감소액(추정) : 7,996명(대상자수)*1,680원(1대당 평균수입)*50%(감면확대율) = △7백만원

☑ 「주차장법」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024. 1. 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2024. 1. 9.>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